

POLICY/정책 BOARD OF EDUCATION OF MONTGOMERY COUNTY

관련 사항: ACA, ACF-RA, GCC-RA, IGP-RA, JFA, JFA-RA, JGA-RB, JGA-RC, JHC, JHC-RA, JHF, JHF-RA

책임 사무실: Chief of Districtwide Services and Supports;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성적 위법행위와 학생의 성희롱 (Sexual Misconduct and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

A. 목적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소유지에서의 성적 위법행위와 성희롱을 금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MCPS 교직원과 학생이 성적 위법행위와 성희롱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무화합니다.

성적 위법행위 및 성희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를 성정합니다.

B. 고려사항

1.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Board)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또는 소유지에서 학생에 의한 성적 위법행위, 성적 비행이나 성희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에서의 MCPS 소유지란, MCPS 가 사용하거나 소유한 모든 땅과 MCPS 버스와 MCPS 차량, MCPS 가 후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모든 시설과 공간, 여기에는 MCPS 가 관련된 개인과 괴롭힘/희롱 혐의가 발생한 상황에 MCPS 의 실질적 통제를 행사하는 장소, 행사, 상황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교육구 그리고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2. 학생, 교직원 그리고 제삼자는 모두 성희롱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모든 형태의 성적 위법행위/비행 및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며 또한 해당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의 예방, 시정, 징계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3. 정의

a) 성적 위법행위/성적 비행(Sexual misconduct)

(1) 성적 위법행위/성적 비행(Sexual misconduct)에는 개인이나 그룹의 실제 또는 인지된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 결혼 상태, 임신/육아 상태, 및/또는 행위가 환영받지 못하고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순응 또는 비순응을 기반으로 하는 성, 기반 고정관념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a) 굴복 또는 거부하는 행위가 개인의 교육 또는 MCPS 활동 또는 프로그램 참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 또는

(b)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가 개인의 교육, MCPS 활동 또는 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결정의 기초가 되거나 결정 요인으로 사용될 경우.

(c) 해당 행위가 개인의 교육 또는 MCPS 활동 또는 프로그램 참여에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할 목적 또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

(d) 개인의 교육 또는 MCPS 활동 또는 프로그램 참여 능력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2) 행위가 개인의 교육 또는 MCPS 활동 또는 프로그램 참여의 조건, 상태, 특권을 변경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하거나 만연한 경우.

(3) 행위는 말로 또는 비언어, 서면, 전자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 성희롱

(1) 성희롱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MCPS 학생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할 경우,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이를 적용한 규정, 교육위원회의 해석인 42 U.S.C. Section 1983(Title IX)를 포함한 기타 시민 권리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 (a) MC 직원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 참여를 조건으로 MCPS의 지원, 혜택,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 (b) 합리적인 사람이 원하지 않는 행위라고 여기어 MCPS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의 동등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거부할 정도로 심각하고, 만연한, 객관적 공격이라고 판단할 경우,
 - (c) 연방법에 정의된 "성폭행(Sexual assault)", "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또는 "스토킹(stalking)".
- (2) 이 정책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행위는 이 정책을 위반하는 금지된 성희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음-
- (a) 미국 외에서 일어난 경우. 또는
 - (b) MCPS가 괴롭힘을 당한 사람과 괴롭힘이 발생한 맥락 모두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의 경우
- (3) 행위가 Title IX에서 성희롱에 충분히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빈도, 그 심각성,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굴욕감을 주는지 또는 단순히 공격적인 행위나 발언을 포함하는지를 전체 상황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해당 행위가 실제로 개인에게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서 타당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 (4) 연방법에 규정된 성희롱의 요소를 충족하지 않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Board Policy JHF,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the *Student Code of Conduct in MCPS*와 *MCPS Employee Code of Conduct*에 따라 조사 및 징계 대상이 됩니다.

- c) 성적 위법행위/비행 또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에는 불쾌한 농담, 비방/중상 욕설 또는 매도, 신체적 공격 또는 위협, 협박, 조롱 또는 알보기, 모욕 또는 비하, 불쾌한 물체 또는 사진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d) 제삼자는 MCPS 직원이나 학생이 아닌 활동에 참여하거나 현장에 있고 MCPS 의 권한이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학부모/후견인 또는 보호자, 멘토, 자원봉사자, 공급업체, 계약자, 코치와 교직원 및/또는 학생이 MCPS 건물에서 상호 작용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C. 입장

1. 교육감은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조항을 알리고, 정책 위반이 주 또는 연방 민사법 및/또는 형사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시를 합니다.
2. 이 정책은 MCPS 학생의 모든 성희롱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학생, 교직원 또는 제삼자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합니다.
3. 성희롱은 일회성 또는 반복적인 사건으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와 지원 조치
 - a) 학생의 성적 위법행위/성적 비행이나 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해당 문제를 신고와 조사 절차를 안내해주고 가능한 기타 지원조치를 안내해줄 학교장 또는 기타 MCPS 교직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Title IX 성희롱 신고(sexual harassment reporting) 이메일 투서함: TitleIX@mcpsmd.org 으로 할 수 있습니다.
 - b) 성적 위법행위/성적 비행이나 성희롱의 경우,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가능한 지원 조치를 통보합니다. 지원 조치에는 상담, 학과목에서 제출일 연장 등의 조정, 수업 일정 조정 또는 당사자 간의 상호 접촉 제한이 포함되며 지원 조치는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c) 교육위원회는 성적 위법행위/성적 비행 또는 성희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 사람 또는 조사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개인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 조사

학생, MCPS 교직원, 계약자, 공급업체 또는 자원 봉사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위법행위/성적 비행 또는 성희롱 혐의는 주 및 연방법의 요건에 따라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와 협력하여 학교장 또는 대리인이 이를 조사합니다.

D. 바라는 결과

1. MCPS 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은 성적 위법행위/성적 비행이나 성희롱을 구성하는 모든 형태의 부적절한 성행위를 인식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2.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성적 위법행위/성적 비행 또는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조사, 대응 및 지원 조치 제공을 위한 효과적이고 법에 따른 조치가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4. MCPS 학생, 교직원, 제삼자는 성희롱이 없는 환경에서 학습하고 일해야 합니다.

E. 전략의 시행

1. 교육감은 다음을 시행합니다 –
 - a) 이 정책과 관련 연방법과 주법 및 규정의 적용을 위해 Title IX 담당자(코디네이터)를 지명합니다.
 - b) Title IX 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조사절차와 적절한 지원조치 제공을 포함하여, 이 정책을 적용하는 규정을 개발합니다.
 - c) 모든 학생과 학부모/후견인/보호자를 성적 위법행위/성적 비행이나 성희롱을 금지하는 이 정책과 관련 연방법 및 주법과, 신고 또는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교육하고 이를 공지, 게시판, 브로셔, 애플리케이션, 계약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등의 문서를 통해 널리

알립니다.

- d) 이 정책 시행을 위해, MCPS 교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을 개발하고 다음을 제공합니다 -
- (1)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해 이 정책의 적절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 (2) 학생, 교직원과 MCPS 소유지의 개인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과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행동규범과 다른 행동지침을 개발합니다.
- e) Maryland 주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학생을 위한 종합 건강 교육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 f) 학교, 직장 및 사회적 환경에서 부적절한 성적 제안과 압력을 완화하는 행동과 태도를 개발하기 위해, 성적 위법행위/성적 비행 및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적절한 다른 기회를 활용합니다.
2. 이 정책을 위반하는 모든 학생은 *MCPS 학생 행동규범(Student Code of Conduct)* 위반에 대응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3. 성희롱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Title IX 위반을 주장하는 학생은, 언제든지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Office for Civil Rights(OCR)에 불만(complaint)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미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에 불만을 제기하기 전 또는 후에, MCPS 에 불만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ivil Rights(OCR)
[전자 문제 신고/불만 신고 양식\(Electronic Complaint Form\)](http://www.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http://www.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Lyndon Baines Johnson Department of Education Building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1100
4. 성에 관련된 범죄를 주장하는 학생은 언제든지 법 집행 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특수 피해자 조사부(Special Victims Investigation Division)
 100 Edison Park Drive
 Gaithersburg, MD 20878

또는 메릴랜드 안전한 학교 톱라인(Safe Schools Maryland Tip Line) 1-833-MD-B-SAFE

F. 검토와 보고

1. 교육감은 성희롱과 성적 위반행위/성적 비행 사건 신고와 기타 규정 준 노력을 분기(quarterly)마다 교육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사건 보고에는 이전 분기의 집계된 사건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준수 보고서(compliance report)에는 불만 사항 및 해결 절차 평가 및 개선사항이 포함되며; 트레이닝 통계와 일정; 모든 MCPS 학교, 사무실, 업무환경과 MCPS 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활동에 이 정책의 성공적 적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교육 위원회의 정책평가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열을 받습니다.

관련자료: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as amended, 42 U.S.C. §2000e et seq;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20 U.S.C. §1681 et seq; 29 C.F.R. §1604,11; 34 C.F.R 106.30(a);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6-104, §6-113, §6-113.2, §7-303.1, §7-424, §7-424.1, §7-424.3, and §11-60; Annotated Code of Maryland, State Government Article, Title 20, Human Relations;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12.05.02; Student Code of Conduct in MCPS; MCPS Employee Code of Conduct; MCPS Guidelines for Student Gender Identity

정책 역사: 결의번호 837-92, 1992년 11월 23일 채택; 결의번호 466-96, 1996년 6월 24일 개정; 결의번호 322-21, 2021년 6월 29일 개정.